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·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,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,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과의 ‘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’ 업무와 ‘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’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고, 재생에너지정책과의 ‘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’ 업무는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관하며, ‘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현물 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 업무’를 재생에너지정책과에 신설하는 한편,

개방형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홍보담당관, 정보관리담당관, 다자통상협력과장, 미래자동차산업과장,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, 통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통상전략과, 기후에너지통상과, 통상협정활용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11. ~ 7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나등급”을 “가등급”으로 한다.

제6조제9항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·지도감독

제10조제16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제1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7.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
18.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7항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소수 재생에너지원(해양, 수력, 바이오 등)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

에 관한 사항

15.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(계통, 제어, 관리) 수립·시행

제38조제2항 중 “홍보담당관, 정보관리담당관, 다자통상협력과장, 통상분쟁대응과장, 미래자동차산업과장,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”을 “통상분쟁대응과장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1호 중 “디지털경제통상과”를 “신통상전략과, 디지털경제통상과, 기후에너지통상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자유무역협정이행과”를 “자유무역협정이행과, 통상협정활용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<u>나등급</u> 으로 한다.	제4조(대변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등급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획조정실) ① ~ ⑧ (생략)	제6조(기획조정실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⑨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12.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·지도감독</u>	<u><삭 제></u>
13. ~ 15. (생략)	13. ~ 15. (현행과 같음)
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⑩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3.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·지도감독</u>
<u>13. (생략)</u>	<u>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u>
⑪ (생략)	⑪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에너지정책실) ① ~ ⑮ (생략)	제10조(에너지정책실) ①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⑯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(계통, 제어, 관리) 수립·시행</u>	<u><삭 제></u>
9. ~ 15. (생략)	9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6.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17.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18.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</u>
16. (생략)	19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⑰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⑰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9. ~ 12. (생략)	9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13.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</u>	<u><삭 제></u>

